

	규정		문서번호	TWP-A217
			제정일자	2013. 03. 18.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일자	2018. 01. 18.
			개정번호	9

목 차

- 제 1조 규정의 목적
- 제 2조 용어의 정의
- 제 3조 교수업적평가의 목적
- 제 4조 평가대상
- 제 5조 평가영역
- 제 6조 교원업적평가(개선)팀
- 제 7조 평가절차
- 제 8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처리
- 제 9조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범위
- 제10조 시행세칙
- 부칙

작성부서	교무처	제정일자	2013.03.18.
------	-----	------	-------------

구 분	검 토					승 인
직 책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취업지원처장	기획홍보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교수업적평가 규정

문서번호	TWP-A217
제정일자	2013. 03. 18.
개정일자	2018. 01. 18.
개정번호	9
페이지	2/6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13. 03. 18.	-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정
1	2013. 09. 30.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 교수업적심사표 개정 및 교육·지도·산학협력전담교원(직무능력교육개발센터교원용) 신설)
2	2014. 01. 21.	- 부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3	2015. 04. 27.	-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
4	2015. 05. 29.	- 전임교원 교수업적심사표 개선 -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심사표 개선 - 교육·지도·산학협력전담교원 업적심사표 개선 - 평가대상 업적기간 구체적 명시 -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삭제 - (별표 1)~(별표 4) 신설
5	2016. 03. 23.	- 전임교원 교수업적심사표 개선 - <대학평가 연구지원 교원용> 전임교원 교수업적심사표 심사 기준 신설 - 외국인교수 업적심사표 개선
6	2016. 10. 13.	- 비정년 전임교원의 교수업적심사 시 제3차 총장평가(수행심사) 평정 기준 명시
7	2017. 01. 26.	-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일괄 개정(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명칭 폐지)
8	2017. 06. 23.	-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명칭 폐지에 따른 용어 정리
9	2018. 01. 18.	-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2 제3항의 기간제 및 계약제 전임 교원의 교수업적평가 시 제3차(총장) 평정 기준 명시 - 2018년도 교수업적 심사표 심사기준 개정

	규정	문서번호	TWP-A217
		제정일자	2013. 03. 18.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일자	2018. 01. 18.
		개정번호	9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 라 한다) 교수업적평가 실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라 함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을 말한다.
2. “업적”이라 함은 교수 혹은 소속 학과(계열) 직무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추구한 행위 결과 정도를 말한다.
3. “업적평가”라 함은 교수 혹은 소속 학과(계열) 소정의 직무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한 행위의 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을 말한다.

제3조 (교수업적평가의 목적) 교수업적평가의 목적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적평가 시행과 교수 및 교수가 소속된 학과(계열)와 학교의 발전에 있으며 나아가 교수인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4조 (평가대상) ①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2 제3항의 기간제 및 계약제 전임교원(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은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단, 연구년 또는 휴직중인 교원과 2학기에 임용된 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15.05.29., 2016.03.23., 2017.06.23., 2018.01.18.>

②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2 제4항의 계약제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 채용형)는 (별표 2)의 심사기준, 교육·지도·산학협력전담교원은 (별표 3)의 심사기준, 원어민교원은 (별표 4)의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한다.<개정 2013.09.30. 2015.05.29., 2017.01.26.>

③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2 제4항의 계약제 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은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지도전담교원, 학문연구전담교원 등과 비전임 교원인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특임교수, 시간강사 등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본 평가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01.26.>

제5조 (평가영역) ①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2 제3항의 기간제 및 계약제 전임교원(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의 교수업적평가는 교육활동, 연구 활동, 봉사활동, 산학협력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제1차 개인자술평가 결과를 제2차 교원업적평가(개선)팀에서 최종 확인한다. 제3차 총장평가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산업체위탁생 및 전공심화과정생 유치 실적, 표창 및 포상 실적, 보직수행실적 등 기초실적과 대학발전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각 영역별 심사항목, 배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05.29., 2016.03.23., 2017.06.23., 2018.01.18.>

	규정	문서번호	TWP-A217	
		제정일자	2013. 03. 18.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일자	2018. 01. 18.	
		개정번호	9	페이지

②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2 제4항의 계약제 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01.26.>

1. 산학협력중점교수 : 업적심사 평정(70점)은 학생교육활동, 산학협력활동, 취업지도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제1차 개인자술평가 결과를 제2차 교원업적평가(개선)팀에서 최종 확인한다. 제3차 총장평가(수행심사) 평정(30점)은 대학발전 기여실적 자술서 등을 참고하여 교원 자질 및 직무수행 정도를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각 영역별 심사항목, 배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05.29., 2016.10.13.>

2. 교육·지도·산학협력전담교원 : 업적심사 평정(70점)은 학생교육활동, 학생지도활동, 산학협력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제1차 개인자술평가 결과를 제2차 교원업적평가(개선)팀에서 최종 확인한다. 제3차 총장평가(수행심사) 평정(30점)은 대학발전 기여실적 자술서 등을 참고하여 교원자질 및 직무수행 정도를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각 영역별 심사항목, 배점, 비율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05.29., 2016.10.13.>

2-1. 삭제<2015.05.29.>

3. 원어민교원 : 교육활동 영역의 심사항목, 배점, 비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05.29., 2016.03.23.>

4. 강의전담교원 :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평가한다. 단, 강의전담교원 중 어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별표 4)를 적용하여 평가한다.<개정 2016.03.23.>

제6조 (교원업적평가(개선)팀) ①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개선)팀을 둔다.

② 교원업적평가(개선)팀의 책임자는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팀장 및 위원은 책임자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교원업적평가(개선)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수업적평가 시행과 평가표 개선연구 등의 교수업적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⑤ 팀장 및 위원의 소집은 총장의 승인 또는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안표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팀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 (평가절차) ① 평가절차는 제1차 개인자술평가, 제2차 교원업적평가(개선)팀 평가, 제3차 총장평가의 3단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2 제4항의 계약제 전임교원의 제3차 총장평가는 행정보직교원, 학부장 등 총장이 위촉하는 다수의 평가위원이 대학발전 기여실적 자술서 등을 참고하여 교원자질 및 직무수행 정도를 6개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수행심사 평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0.13., 2017.01.26., 2018.01.18.>

	규정		문서번호	TWP-A217
			제정일자	2013. 03. 18.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일자	2018. 01. 18.
			개정번호	9

② 평가대상 업적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으로 한다, 다만 신입교원의 경우 최초임용년도 평가대상 업적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으로 하며, 재임용 여부 결정 통지 당해연도 평가대상 업적은 계약제 전임교원 임용규정 및 개별 계약 사항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05.29., 2017.01.26.>

③ 위원회는 각 평가 자료의 증빙서류를 검증하고 그 사실일치 여부를 확정한다.

④ 교수 및 학과장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는 평가과정이 종결된 후 담당부서인 교무처에서 보관한다.

⑥ 위원장은 직전 학년도 교수업적평가 최종결과를 평가완료 후 매년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10.13.>

제8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처리) ① 각 교원 및 학과(계열)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 접수 시 지체 없이 이를 재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본인의 위원회 출석 및 직접적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범위) ① 평가결과는 교수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교수의 승진, 보직, 성과급여, 재임용, 연구년 교원 선정 등 주요인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교수 및 업무 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단, 총장 및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평가대상 및 평가영역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또는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재직중인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2015학년도 신규임용 및 재임용 교원에게 우선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교원 임용 대상자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된 날부터 적용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217
			제정일자	2013. 03. 18.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일자	2018. 01. 18.
			개정번호	9
		페이지	6/6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별표 1) 전임교원 교수업적심사표 심사기준<신설 2015.05.29. 개정 2016.03.23., 2018.01.18.>

□ 교수업적심사 평정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비율		
I. 교육활동	I-1. 주당강의일수(학기당)		10점	38.0%		
	I-2. 교원근태관리(감점)		감점			
	I-3. 담당시수(학기당)		10점			
	I-4. 강의평가결과(학기당)		10점			
	I-5. 강의질관리		10점			
	I-6. 학생상담지도실적(가감점)		6점			
	I-7. 재학생 충원율		30점			
소계			76점			
II. 연구 활동	II-1. 연구논문 발표(1편당)		8점	6.5%		
	II-2. 교원 연수일수(1년)		5점			
소계			13점			
III. 봉사활동	III-1. 대내외 위원회 활동(증빙서 첨부)		2점	5.5%		
	III-2. 행정보직(기본점수)		3점			
	III-3. 대학의 명예신장		2점			
	III-4. 대학홍보 개인실적과 학과발전 기여도(1회당)		2점			
	III-5. 사회봉사 지도 실적		2점			
소계			11점			
IV. 산학협력 활동	IV-1. 산학협력 교육영역	IV-1-1. 캡스톤디자인 및 학과 학술행사	5점	50.0%		
		IV-1-2. 진로 및 취업지도	40점			
		IV-1-3. 학생 공인자격 취득 실적	15점			
		IV-1-4. 계절제 및 학기제 실습학기제 지도 실적	8점			
		IV-1-5. 재정지원사업 등 비정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신설 2018.01.18.>	5점			
	IV-2. 산학협력 사업수행 및 연구영역	IV-2-1. 의장/실용신안/특허의 인증과 기술이전(1건당)	3점			
		IV-2-2. 개인별 산학협력 사업 수행 및 연구 실적	9점			
	IV-3. 산학협력 봉사영역	IV-3-1. 대학발전 기여 및 산학협력 관련 실적	15점			
	소계				100점	
	총계				200점	100%

※ 삭제<2018.01.18.>

□ 총장평정<신설 2018.01.18.>

1. 교원업적평가 3차(총장) 평정 방법

가. 기초실적 :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산업체위탁생 및 전공심화과정생 유치실적, 표창·포상실적, 보직수행실적 등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3차(총장)평정 : 기초실적과 대학발전 기여도, 정성평가를 고려하여 최종 5등급으로 평가함.

2. 항목별 배점기준

가. 총장 정량평가(60점)

항목	배점	320점 기준 실반영점수		항목별 배점 세부내역				
		최소	최대					
재학생 충원율	50	3.2	15.8	94%이상	95%이상	96%이상	97%이상	98%이상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취업률	50	3.2	15.8	65%이상	70%이상	75%이상	80%이상	85%이상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산업체위탁생 및 전공심화과정생 유치 실적	30	0.0	9.5	- 등록인원이 1인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기본 점수 10점을 부여하고 1인당 1점씩 가산점 부여				
표창·포상실적	20	1.6	6.3	기본 점수	총장, 도지사급 이상	이사장, 장관급 이상	대통령	
				5점	10점	15점	20점	
보직 ^{주1)}	40	3.2	12.6	학과장			부속기관장,	부총장,
				C급	B급	A급	학부장, 기타보직	처장, 단장, 원장
				10점	20점	30점	30점	40점
합계	190	11.2	60					

주1) 보직 항목 배점은 당해연도 재직 기준으로 6개월 이상(합산 경력) 근무 시 인정하며 겸직의 경우는 유리한 1개 항목만 반영함.

주2) 기초실적 항목별 배점기준은 당해연도 대학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3) 총 190점 만점을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나. 총장 정성평가(60점) : 교원 정성평가 심사표를 활용하여 총장이 60점 범위내에서 평가함

3. 3차(총장) 평정 배점 기준

가. 등급 부여 기준

구 분	E급	D급	C급	B급	A급
기초실적 배점 합계	0점~ 40점 미만	4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100점 미만	100점 이상~ 120점

※ 2번 항목의 총장 정량평가(60점) + 총장 정성평가(60점) = 120점을 기준으로 등급 부여.

나. 등급별 배점표

구분	E급	D급	C급	B급	A급
점수	40	60	80	100	120

※ 교원 정성평가 심사표

피평가자	소속	성명			평가자	직급	(인)			
	직위					성명				
구 분	평 가 항 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교원자질 및 직무수행	1.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및 인성 (교직원간 인화관계 및 애교심 등)				15	12	9	6	3	
	2.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직에 대한 사명감				15	12	9	6	3	
	3. 전문대학의 교육목표 이해 및 실무지식				15	12	9	6	3	
	4. 학생 교육에 대한 소신과 가능성				15	12	9	6	3	
	합계				/ 60점					
기타의견										

(별표 1-1) <대학평가 연구지원 교원용> 전임교원 교수업적심사표 심사기준
<삭제 2018.01.18.>

(별표2)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심사표 심사기준<신설 2015.05.29., 개정 2016.10.13., 2018.01.18.>

□ 업적심사 평정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I. 학생교육활동	I-1. 주당강의시수(학기당)	3점
	I-2. 수업이행여부(1년)	1점
	I-3. 강의평가결과(학기당)	6점
소계		10점
II. 산학협력활동	II-1. 대학발전 기여	5
	II-2. 산학협력 관련 실적	8
	II-3. 학생 창업지도	2
	II-4. 산업체 실습학기제	20
소계		35
III. 취업지도활동	III-1. 취업 실적	30
	III-2. 산업체 취업협력 실적	5
소계		35
총계		70점(70%)

※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심사표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의 상한은 70점으로 한다.

□ 총장평가(수행심사) 평정

구분	심사항목
교원자질 및 직무수행	1.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및 인성
	2.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직에 대한 사명감
	3. 교직원간 인화관계 및 애교심
	4. 전문대학의 교육목표 이해 및 실무지식
	5. 산학협력지원 학과 만족도
	6. 취업정보제공 학과 만족도
총계	30점(30%)

(별표 3) 교육·지도·산학협력전담교원 업적심사표 심사기준<신설 2015.05.29., 개정 2016.10.13., 2018.01.18.>

□ 업적심사 평정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I. 학생교육활동	I -1. 교원근태관리(감점)	감점
	I -2. 담당시수(학기당)	3점
	I -3. 강의평가결과(학기당)	12점
	I -4. 강의 질관리	8점
소계		23점
II. 학생지도활동	II-1. 학생상담지도 실적(1년)	2점
	II-2. 학과학술행사	2점
	II-3. 재학생충원율	20점
소계		24점
III. 산학협력활동	III-1. 취업지도	12점
	III-2. 학생 실습학기제 지도 실적 및 산학협력 관련 실적	6점
	III-3. 대학발전 기여	5점
소계		23점
총계		70점(70%)

□ 총장평가(수행심사) 평정

구분	심사항목
교원자질 및 직무수행	1.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및 인성
	2.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직에 대한 사명감
	3. 교직원간 인화관계 및 애교심
	4. 전문대학의 교육목표 이해 및 실무지식
	5. 수업의 충실도
	6. 학생 교육에 대한 소신과 가능성
총계	30점(30%)

(별표 4) 외국인교수 업적심사표 심사기준<신설 2015.05.29., 개정 2016.03.23., 2018.01.18.>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비율
I. 교육활동	1. 주당강의일수(학기당, 특별어학강의 포함)	14점	100%
	2. 주당담당시수(학기당, 특별어학강의 포함)	16점	
	3. 담당과목수(학기당, 특별어학강의 포함)	10점	
	4. 야간강의일수(학기당, 특별어학강의 포함)	10점	
	5. 정규교과목 외 특별 어학강의 일수(학기당)	10점	
	6. 어학교실 수료율(학기당)	10점	
	7. 강의평가결과(학기당)	30점	
	8. 휴강에 따른 보강 이행여부(감점)	감점	
	9. 강의시간 미준수 여부(감점)	감점	
합계		100점	100%

(별지 제1호 서식) 삭제<2015.05.29.>

(별지 제2호 서식) 삭제<2015.05.29.>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15.05.29.>

(별지 제3-1호 서식) 삭제<2015.05.29.>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15.05.29.>